

광주지방법원 2023. 9. 6 선고 2022가단54037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신용보증기금
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광식

피 고 1. A 영농조합법인
2. B
3. 주식회사 C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도하

변 론 종 결 2023. 7. 5.

판 결 선 고 2023. 9. 6.

주 문

- 원고에게,
가. 피고 A 영농조합법인은 282,297,046원 및 그 중 183,299,473원에 대하여 2022. 7. 28.부터, 97,744,587원에 대하여 2022. 8. 10.부터 각 2023. 3. 3.까지 연 8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,
나. 피고 B은 피고 A 영농조합법인과 연대하여 가.항 기재 돈 중 98,997,573원 및 그 중 97,744,587원에 대하여 2022. 8. 10.부터 2023. 3. 3.까지 연 8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각 지급하라.
2. 가. 피고 주식회사 C와 피고 A 영농조합법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. 2.

9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A 영농조합법인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
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22. 2. 9. 접수 제21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
이행하라.

다.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A 영농조합법인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6/7 지분에 관하여
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22. 2. 9. 접수 제21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
이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 A 영농조합법인은 아래와 같이 은행들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사이에
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.

보증번호	보증금융기관	보증일	대출금액	주채무자	연대보증인
	대출과목	보증기한	보증금액		
D	E 은행 나주지점	2020-08-27	200,000,000	A 영농조합법인	-
	기업튼튼보증 서대출	2021-08-26 2022-08-26	180,000,000		
F	기업은행 금호동지점	2021-08-20	120,000,000	A 영농조합법인	B
	중소기업자금 대출	2022-08-19	96,000,000		

나. 피고 A 영농조합법인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22. 3. 20.경 및 2022. 3. 26.경 원리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.

다. 원고는 피고 A 영농조합법인을 대위하여 2022. 7. 28.경 E은행에 183,299,473원을, 2022. 8. 10.경 중소기업은행에 97,744,587원을 각 변제하였고, 채권보전비용으로 1,252,986원을 지급하였다.

라. 피고 주식회사 C는 2022. 2. 9.경 피고 A 영농조합법인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1) 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채권최고액 5,400만 원, 채무자 A 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22. 2. 9. 접수 제2123호로 근저등권설정등기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’라 한다)를 경료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7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피고 A 영농조합법인,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청구의 표시

원고는 피고 A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대위변제금과 대지급금의 합계 282,297,0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, 피고 B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부분에 대한 대위변제금과 대지급금의 합계 98,997,5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.

나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3.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,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,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).

살피건대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에 이미 원고의 피고 A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. 나아가 피고 A 영농조합법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약 40일 후인 2022. 3. 20.경부터 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기 시작하는 등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A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,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A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1)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(대법원 2007. 10. 11. 선고 2007다45364 판결 참조),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(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2다200554 판결 참조).

2) 살피건대, 위 인정사실, 갑 제7호증의 기재, 이 법원의 나주시청 및 나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, G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,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A 영농조합법인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시가가 약 7,400만 원인 사실, 반면에 피고 A 영농조합법인은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 282,297,046원,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채무 48,965,590원을 비롯하여 다수의 채무가 있었음이 인정된다.

따라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 A 영농조합법인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행행위에 해당하고,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 주식회사 C의 악의는 추정된다.

3) 이에 대하여,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A 영농조합법인과 불과 3개월 6일 남짓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재산상태를 알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가압류 등의 등기도 없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피고 주식회사 C가 2021. 11.경부터 피고 A 영농조합법인과 거래를 시작한 사실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가압류나 가처분의 등기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악의 추정을 복멸하고 피고 주식회사 C가 선의의 수익자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다. 소결

따라서 피고 A 영농조합법인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,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A 영농조합법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

판결한다.

판사 김희석

별지

부 동 산 목 록

1. 전라남도 영암군 창고용지 1226㎡

2. 전라남도 영암군

[도로명주소] 전라남도 영암군

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작업장 90㎡

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저온창고 18.9㎡

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사무실 56.7㎡

부속건물

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조장 33.6㎡

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조장 33.6㎡

- 이상 끝.

1)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해서는 6/7 지분에 한한다.